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4355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4355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단2798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이경인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F

2.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관

변론 종결 2023. 3. 9.

판결 선고 2023. 4. 13.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단27985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소송수계신청인 B, D,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망 A의 소송수계인 B, D, E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3. 이 사건을 제1심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4. 소송수계신청 이후의 소송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인 B, D, E와 피고 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C에게,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로부터 43,333,333원,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C로부터 28,888,889원,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D로부터 28,888,889원,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E로부터 28,888,889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서울 용산구 H 대 104.8m²를 인도하라.

이 유

1. 망 A의 소송수계인 B, D, E의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적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2021. 11. 24.자 소송수계신청 중 B, D, E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가 2021. 8. 17. 사망하자, 2021. 11. 24.자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통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배우자인 B와 자녀들인 C, D, E임을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조사의 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409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이 위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제5회 내지 제7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그 이후의 재판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2021. 8. 17.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처 B, 자녀들인 C, D, E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소송수계인 C가 망인을 단독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 D, E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이 B, D, E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다음 망인의 소송수계인 B, D, E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소송절차의 진행을 잘못된 위법이 있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소송수계신청인 B, D,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D, E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참조), 위 취소부분 소송이 중단된 채 제1심에 계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민성

판사차은경

판사김진철

별지